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6
----------	-----

제출년월일 : 2010. 7.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일치시키고, 규칙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및 별지서식을 행정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조문 일치(안 제2조, 제5조의2)
-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별표5)
- 다.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근거법령 삽입 및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5조의 2, 제9조, 제17조)
- 라. 행정서식 설계기준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서식)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3. 근거법규

- 가.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나. 「식품위생법」 제36조, 37조
- 다. 「사무관리규정」 제7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 없음(2010. 5. 3 ~ 2010. 5. 2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을 “「식품 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호 중 “제6조의3제4호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4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제1호의 규정에 따라”를 “제1호에 따른”으로, “장소 또는 용기에”를 “장소 및 용기에 담아”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신고(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는 “신고(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다음 각목의 1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변경신고)필증을”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변경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경우”를 “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피처분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제17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을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제1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 내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 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폐기물 관리법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을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포함)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10	20	30

【별지 제1호서식】

(전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		생년월일(남/여)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총 급식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영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kg/일		kg/월	kg/월	
자가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증명서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kg/월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 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총 급식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영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방법	처리시설능력	연간 처리량	부산물 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량	재활용방법	업체명	업종
						(전화)
<p>「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p>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 m ²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전면)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처리계획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업장)		(전화 :)				
공동수집운반	수집운반량	자가수집운반			위탁수집운반		
		소유자	차종	적재능력	업소명	대표자	
	kg/월						
공동보관	보관시설소재지		보관방법		보관시설규모		보관후 위탁업소명
공동처리	처리량 (발생예상량)	감량처리			재활용		
		시설종류	소재지	시설능력	처리방법	위탁업소명	대표자
	kg/월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운영기구의 운영계획서(회원명단 및 시설장비구입 및 운영비용분담계획)
-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내역
- 공동처리를 위한 시설·장비(차량포함)설치·운영계획서(자가처리시만 해당)
-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m²(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7조 (준용)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u>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또는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및 「울산광 역시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u></p> <p>1. <u>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u></p> <p>2. <u>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u></p> <p>② (생략)</p>	<p>제16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피처분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p> <p>제17조 (준용) ① ----- <u>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u> ----- -----</p> <p><u><삭 제></u></p> <p><u><삭 제></u></p> <p>② (현행과 같음)</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76)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 7. 7(수)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10. 7. 7(수)
- 라. 위원회 심사 : 2010. 7. 19(월)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일치시키고, 규칙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및 별지서식을 행정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조문 일치(안 제2조, 제5조의2)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별표5)
-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근거법령 삽입 및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5조의 2, 제9조, 제17조)
- 행정서식 설계기준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서식)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4. 근거법규

-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식품위생법」 제36조, 37조

5. 검토의견 (전문위원 성낙팔)

-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서
-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영업허가 등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인용 조문 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주민의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개정,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과
- 기타 조례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인용법령 및 자구를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